

보도시점 2023. 12. 7.(목) 12:00 / 배포 2023. 12. 6.(수) 08:30
<지면: 12. 7.(목) 석간>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소자본 창업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22건 개선 -

- 진료경험·만족도 등 단순 이용후기의 게시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고 허용
- 현재 하나뿐인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수요자 선택권 확보
- 아파트 재할용품 수거업 등 단순용역업의 진입장벽 완화로 관리비 경감
-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개선하여
민간사업자의 배관망 이용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민 후생증대,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등이 포함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12.7.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추진결과 요약(22건) >

분야	국민후생 증대	중소사업자 사업기회 확대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및 부담 완화	혁신성장·신산업 활성화
대표 과제	자동차, 알뜰폰, 농산물 유통, 주택관리 등 5건	소자본 창업자 비용 경감 및 편의제고 4건	LNG 배관망 이용 부담완화 등 10건	사물인터넷, 의료 플랫폼, 재생에너지 분야 등 3건

〈주요 개선사례〉

1. 국민후생 증대

먼저 독과점 고착화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였다.

(자동차 종합검사) 전국 1,413개소의 자동차종합검사소 기술인력들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김천까지 이동하여야 했지만, '24년 하반기까지 김천 외의 지역에 교육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24년))

교육기관간 경쟁을 통해 교육품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등 원거리 거주자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자동차종합검사소의 37.1%인 524개소가 수도권에 위치

(아파트 관리)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가능해졌다.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既개정)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되어 경험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 균형있게 적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

두 번째로 중소기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과도한 진입요건으로 인하여 창업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였다.

(인력부담 완화)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된다.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 하반기),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25 상반기))

*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신의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검사(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 가공사업자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학 등의 관련 학과 졸업자를 채용해야만 했지만, '25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인력 확보 부담이 완화되고 능력에 기초한 인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업비용 경감) ①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가 추진된다. (고용부,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추진(∼'24), 직업안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3.8))

위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10㎡(유료직업소개업)~20㎡(근로자파견업)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해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었다.

앞으로 공유오피스와 같이 다양한 사무실 보유형태가 가능한 시대변화에 따라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일정 면적을 요건으로 하는 대신 사업상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면 되도록 하는 등 적정한 물적요건을 마련할 계획이고, 유료 직업소개업의 경우에는 의료, 법률 등 고급·전문인력분야 온라인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②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설비요건을 완화하여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관리지침 개정(∼'23) 및 수도법 시행령 개정(∼'2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란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관리, 점검·정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분야별(세척, 누수관리, 점검·정비)로 정해진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세 분야의 등록요건에 중복되는 인력이나 설비가 있어도 이를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어* 둘 이상의 분야에 등록할 경우 중복투자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예시) 유량계를 보유하고 있는 세척분야 사업자가 누수관리 분야를 추가등록하려면 누수관리 분야 등록요건에 따라 유량계를 추가보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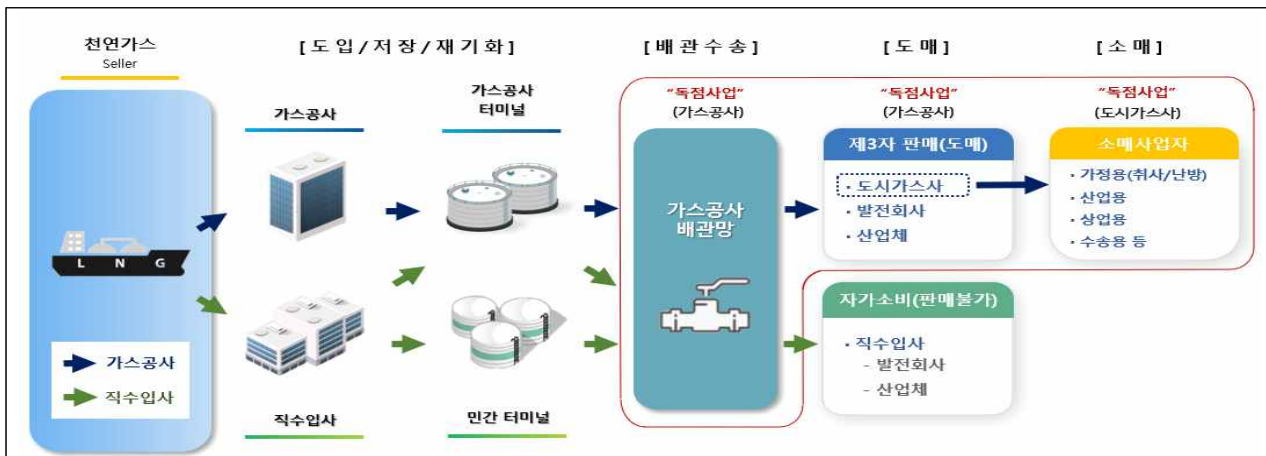
앞으로는 중복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복투자에 따른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3.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및 부담완화

다음으로 사업활동 제약으로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분야를 개선하였다.

(천연가스 배관망)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하여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주로 LNG발전사)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발전 단가의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부·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24))

〈LNG 수입 및 유통구조〉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관망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

* 한국가스공사는 배관망 운영을 독점하면서 배관망 이용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배관망 운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유인이 있음

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23),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힐 계획이다.(∼'24)

* (예시) 배관망 주요지점에서의 시간대별 배관압력, 유량, 인입가능유량, 배관증설 계획 등

(산업단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 (부지면적대비 건축물면적의 비율)이 축소되어 건축비 부담을 덜게 된다. (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3.9))

*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부지면적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건축물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체로 40%의 기준건축면적율이 적용되다 보니 불필요한 건축비용이 발생하는 등 입주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우선 연구개발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20%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의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 혁신성장 · 신산업 활성화

마지막으로 신산업·혁신성장을 육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이다.

(사물인터넷)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영업규제가 일부(통신기기제조업 겸업규제) 폐지된다.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既발의)

*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기능을 부가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자동차회사와 같은 비통신 분야의 기업이라도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통신기기제조업의 겸업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최근 사물인터넷 분야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통신 간 융합 시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 IoT 매출액(조원) : ('15년) 4.6 → ('18년) 9.4 → ('21년) 18.6 (연평균 26.2%↑)
IoT 사업체수(개사) : ('15년) 1,212 → ('18년) 2,204 → ('21년) 2,709 (연평균 14.3%↑)

앞으로는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규제를 폐지하여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연계·융합을 촉진하고, 관련 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플랫폼)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의료광고가이드라인 개정(~'24년))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불확실함이 있었는데,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 (예시)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로서 의료광고로 보지 않음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되어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외 기타 과제는 붙임 자료 참조

<붙임>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역 및 일정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심재식 (044-200-4351)
		담당자	서기관	남형우 (044-200-4352)



1. 국민후생 증가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 (현행) '인증대체부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인식으로 저렴한 대체부품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완성차의 OEM부품 고착화 ■ (개선) '인증대체부품' → '품질인증부품' 용어변경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既발의)	국토부
2	▣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기준 유연화 ■ (현행)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도매대가 산정기준이 법률로 단일방식으로만 규정되어 알뜰폰 요금의 경직화 초래 ■ (개선) 시장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산정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既발의)	과기부
3	▣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도 개선 ■ (현행)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이 미비하여 기존법인이 그대로 재지정되는 등 장기 독과점 형성 우려 ■ (개선)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고 평가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여 신규법인 진입 활성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既발의)	농식품부
4	▣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관 확대 ■ (현행)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감천) 하나만 지정되어 원거리 이동 등 불편초래 ■ (개선) 교육기관을 복수로 지정하도록 개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4 하반기)	국토부
5	▣ 아파트관리사업 입찰제도 개선 ■ (현행) 재활용품 수거 같은 단순작업에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경우 신규업체 진입곤란 ■ (개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격심사 외 최저(최고)낙찰방법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3. 6월 既개정)	국토부

2.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근로자파견업 사무실 요건 완화 ■ (현행)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고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일정 면적요건 대신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로 완화 추진* * 구체적으로는 파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적절한 물적요건을 마련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24. 하반기)	고용부
2	■ 유료직업소개업 사무실 요건 완화 ■ (현행)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려면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함 ■ (개선) 보건의료, 법률 등 고급·전문인력에 대해 온라인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면적요건 적용 제외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3. 8. 입법예고)	고용부
3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인력·장비요건 완화 ■ (현행) 세척·누수관리·점검정비 등의 세부분야에서 둘 이상을 등록하려면 각 분야 요건이 중복되어도 모두 갖춰야 함 ■ (개선) 둘 이상의 분야 등록시 중복된 요건이 있다면 하나만 충족하여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완화 * (기술인력) 동일 법인·개인이 두 개의 대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 1인 중복허용, 세 개 업종 모두 등록시 최대 2명 중복허용 * (시설장비) 중복되는 사무실과 장비는 모두 허용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관리지침 (‘23. 하반기) 수도법 시행령 (‘24. 상반기)	환경부
4	■ 축산물가공업 등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 완화 ■ (현행)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종업원 중에 축산물자가품질검사자를 지정하려면 의학·수의학·축산학 등 학과(학부)에서 미생물학·축산가공학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해야 함 ■ (개선) 관련 학과 전공자가 아니어도 관련 자격증보유나 일정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완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4. 하반기)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25. 상반기)	식약처

3.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및 부담완화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 부처
1	■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 개선 ■ (현행) 필수설비인 배관망의 공동이용 조건을 독점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정하도록 하여 망운영의 중립성 저해 ■ (개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	배관시설이용규정 ('23. 하반기)	산업부
2	■ 천연가스 배관망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 (현행) 배관망 이용에 필요한 정보 미제공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한 망배분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 (개선) 배관망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의 공개 확대 * (예시) 배관망 주요지점에서의 시간대별 배관압력, 유량, 인입가능용량, 배관증설 계획 등	배관시설이용규정 ('24. 하반기)	산업부
3	■ 의료기기공급내역 보고대상 축소 ■ (현행) 의료기기 제조·유통업자는 자신이 공급한 의료기기의 위해성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의 공급내역을 보고 ■ (개선) 위해성 낮은 1·2등급 의료기기는 중고의료기기와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에 한해 보고하도록 부담 경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3. 7. 입법예고)	식약처
4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개선 ■ (현행)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수주시 약 80여개 항목의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토록하여 건설사에 행정적 부담 발생 ■ (개선) 예정가격, 대금수령현황 등 나라장터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중복되는 항목 자동입력 시스템 마련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시스템 개선 ('23. 하반기)	국토부
5	■ 산업구역 내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을 완화 ■ (현행) 비제조업체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40%의 기준건축면적률(건축면적/부지면적이 적용되어 필요 이상의 건축비 부담 발생 ■ (개선) 연구개발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우선 20%로 완화하고 다른 업종도 추가완화 추진	산업단지 관리지침 ('23. 9. 입법예고)	산업부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부처
6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참여사업자 권익보호 ■ (현행) 제3자 PPA*을 참여사업자(발전사 및 전력구매자)는 한전의 귀책으로 전력수급이 중단되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됨(경과실의 경우 면책) * (Power Purchase Agreement)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기이용자간 전력거래를 한전이 중개해 주는 제도로(21.6월 도입)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만을 선택구매할 수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수단으로 활용 ■ (개선)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인정	제3자 PPA표준계약서 개정 ('23. 하반기)	산업부
7	■ 음료류 산소량 측정 시험법 확대 ■ (현행) 음료분류상 기타음료*의 판매를 위해서는 용존산소량 측정이 필수적이지만 하나의 시험법(적정법)만 인정되어 사업자 선택권 제약 * 먹는물에 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는 음료로서 타유형 음료(탄산 커피 등)에 속하지 않는 음료, 용존산소량 기준(24mg/L) 충족 필요 ** 당분이 함유된 음료는 적정법 적용시 실제보다 산소량이 적게 계측되어 불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보다 정확성이 높은 다른 방법 선택이 불가 ■ (개선) 광학식 센서법, 전극법 등 국내에서 인정되는 다른 방법도 가능하도록 시험법 마련 및 규정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24. 하반기)	식약처
8	■ 기존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면제대상 확대 ■ (현행) 환경부가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유해성 심사를 받은 물질)로 고시한 일부물질이 고용부에서도 유해·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어 해당물질 취급 기업의 추가부담을 유발 ■ (개선)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고용부의 유해·위험성 조사면제 확대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 하반기)	고용부
9	■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유해·위험성 조사면제대상 확대 ■ (현행) 저우려고분자화합물에 대한 환경부의 등록면제기준과 고용부의 유해·위험성 조사면제 기준이 달라 환경부가 등록면제한 물질이 고용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등 기업부담 유발 ■ (개선)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고용부의 유해·위험성 조사면제 확대 추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24 상반기)	고용부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부처
10	▣ 인체용 의료기기의 동물사용 가능광고 여부 명확화 ■ (현행) 인체용 의료기기를 동물용도로 판매·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불명확하여 의료기기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애로 발생 ■ (개선) '동물병원개설자(수의사) 책임하에 동물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동물용의료기기 질의응답집 (‘24. 하반기)	농림축산 검역본부

4. 혁신성장 신산업 활성화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제도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사물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 (현행) 비통신 분야 기업이라도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되어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규제(과기부 승인필요)가 적용 * 자동차에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음악·영상 스트리밍 등 통신기능을 부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개선) 통신기능 융합상품의 개발·출시가 쉬워지도록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승인 대상에서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既발의)	과기부
2	▣ 소비자간 의료정보 공유 활성화 ■ (현행)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건전한 정보공유가 위축되고 의료정보 공유플랫폼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 (개선) 소비자 단순 이용후기는 의료광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허용범위 명확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24. 하반기)	복지부
3	▣ 제3자 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전력거래 규제완화 ■ (현행)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재생에너지 발전사는 초과발전량(판매 후 남은 전력)의 거래가 제한 ■ (개선) 초과발전량을 전력시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23. 8월 既개정)	산업부